

해외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산림관련 외국보조금 현황 및 수출지원제도 파악
2. 출장목적: 산림관련 외국보조금 현황 및 수출지원제도 파악
3. 출장지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보고르
4. 출장기간: 2010. 06. 08 ~ 06. 12.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연구위원	송 주 호
산림정책연구실	초빙연구위원	이 장 호

6. 출장일정

일 정	주요 활동내역	비 고
6.8~8	서울 출발, 자카르타 도착	
6.9	인도네시아 산림부, 주인니 한국대사관 방문	
6.10	국제임업연구소(CIFOR), KOICA	자카르타 → 보고르
6.11~12	코린도 제지공장, 귀국	보고르 → 자카르타 → 서울

7.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방문기관	면담자	연락처
인니 산림부	Hardi Pasaribu 산림부장관 보좌관	
주인니 한국대사관	대사 김호영 임무관 김용관	(62-21) 520-1915 (0812)917-5358
KORINDO Group	부회장 이원재 상무 김훈	797-6022 797-5959(EXT. 328)
CIFOR	배재수 박사	(62-251) 862-2622
KOICA 파견관	프로젝트메니저 이규태(림핀 종묘소 및 배양소) 프로젝트 디렉터 홍창원 (A/R CDM and REDO)	(62-21) 571-1194 (62-21) 757-9184
산림조합중앙회 인도네시아 법인	성인경	(62-21)830-6531

II. 주요 출장 결과

1. 인도네시아 개황

- 인도네시아는 인구 2.5억명의 잠재 거대 시장이며, 국토면적은 1,919,440 km²로서 남한 면적의 19배임.
 -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팜오일 최대 생산국(18백만톤, 45%)
- 인도네시아는 유도유노 대통령 취임(09-14임기) 이후 국제 영향력이 강화되고, 국내적으로도 강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09년 경제성장을 4.5% 달성, 2010년에도 5.5% 성장 전망
- 우리나라는 1973년 인도네시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약 31천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어 최대 외국인 집단임.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에서 총 70만 ha(제주 면적의 4배)의 조림지 확보
 - 합판 • 제지회사인 KORINDO (Korea-Indonesia)는 인도네시아 재계 20위 규모 회사임.

2. 인도네시아 산림정책

- 산림개발 모라토리엄 선언
 - 노르웨이로부터 CO2 감축계획에 따른 보상금(총 40억\$ 규모중 10억\$)을 받고 2011년 초부터 2012년 말까지 천연림과 이탄토 지역의 팜오일농장 허가발급 중지 선언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는 이산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롬복(Lombok) 지역에서 시범조림사업(A/R CDM)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해외조림사업확대를 위해 2017년까지 1단계로 25만ha의 해외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점차 확대해 100만 ha 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 2009년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등에 산림조합중앙회와 무림제지, LG 상사 등이 진출해 4만 ha를 확보하였음.

3. 주요국의 산림보조 정책의 특징

○ EU와 독일의 경우

- 첫째, 임업보조금 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음. 중앙정부는 분야별 지원대상 및 조장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근거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지원사업과 별도로 지방차원에서 지급하거나 꼭 필요한 때에는 자체재원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둘째, 임업보조금 지급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더욱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증가하고 있는 한계농지의 신규산림조성과 농촌지역개발 사업차원에서의 산림사업 분야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 또한 활엽수 식재나 혼효림 조성 등을 통해 숲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지향하고 있음.
- 셋째, 산림의 특별한 보호 및 생태 기능의 확보를 위해 ‘산림 조정보조금’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경영계약 보조금’과 같은 직불형태의 임업보조금 제도를 도입, 운용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음.

○ 일본

- 첫째, 국가와 지방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기 위해 지방분권화의 추진, 환경보전형 사회로의 이행, 주민참여형 행정시스템 구축, WTO 등 세계자유화 시대에서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국가와 지방과의 역할 분담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산림사업의 사업성격과 실시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국가 보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둘째, 지역의 창조성과 자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산림사업의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과의 역할 분담 명확화를 통한 사업성격 구분에 따라 개별사업을 메뉴화·통합하여 지방에서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여 재량권을 넓혀주고 있음.
- 셋째 지역산림계획에 따른 사업규모가 확정되어 보조금이 교부되면 지역 내 실정을 감안하여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대신 사업목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협의과정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후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

음.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의 임업분야 보조금 제도는 일반 기업체에 대한 지원제도는 거의 없고 주로 산촌주민의 조림/녹화와 관련되어 있음.

(1) 국민조림지 500,000ha에 대한 조림비용 융자 : 산촌주민(주민조합 포함)에게는 300ha까지 표준조림비용을 이자율 7.75~8.25%,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하고, 국영기업 또는 민간기업에게는 조림비의 40%까지(최대 3천ha) 일반은행이율(12~14%)로 융자함.

(2) 10억 그루 조림사업 지원(CO2 감축정책과 연관) : 지방산림국 일반예산 지원 36백만 그루, 민간 국영기업 기부 3억 그루, 마을림 및 주민림 50만ha 3.2억 그루, 강 유역 복원조림 3억 그루, 협동 주민림 50백만 그루 등.

- 인도네시아는 근본적으로 벌채분야에는 보조금 제도가 거의 없음. 오히려 원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산림공과금을 납부해야 함. 천연림에서 택벌방식(HPH)으로 벌채하는 경우 조림기금과 산림지원세를 납부해야 하고, 천연림에서 개별방식으로 벌채하는 경우 상기 조림기금, 산림지원세 이외에 '임상축적 가치 교환세'(PNT)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PNT는 농장조성이나 조림을 위해 산림을 개별하는 경우 벌채 원목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국가가 모두 환수해 가는 제도로써 실수요자만 농장조성 또는 조림을 위한 벌채를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2009년에 제정되어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4. 시사점

- WTO 규범에 대응한 임업보조금 개편은 보조사업별 지원 목적을 생산·유통개선, 소득 지지, 경쟁력 향상 등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일반적인 산림자원 조성·관리 차원, 환경개선과 관련한 사업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함.
- 다자간 협상인 WTO의 성격상 국가 지원의 축소가 초점이므로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별지원 사업을 묶어 포괄 및 통합 보조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형태와 특정성 회피를 위해 지원대상(사업주체)을 특정 개인, 단체, 기업을 지정하지 않고 광의의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단지 생산 보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① 새로운 관점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로의 대응, ② 연구개발·기술지도 활동의 확대, ③ 자연재해 등에 대한 위기대책이나 병충해 대책, ④ 임업생산소득보험이나 재해 등에 대한 보상지원, ⑤ 조건 불리지역 대상의 지역정책 하에서의 지원 등을 중심으로 임업보조금 체계를 개편하여 기존 임업을 「순환자원산업」으로서 인식시켜 국민생활 안전 보장형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조건을 국제적 규범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산림의 다양한 환경서비스에 대한 사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산림의 역할 증대를 통해 다면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환경재의 생산과 결부지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형태로의 직불형태의 지불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임업부문에의 직불형태 지불제 도입이 정책수단으로서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산림경영을 위한 환경기능 개선, 임업채산성 저하에 따른 소득보전 등 다양한 산림정책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느 때, 어디에, 어떻게 지불 할 것인가 명백한 기준을 수립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또한 행정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지불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소요될 과도한 행정비용과 행정 기술적 집행가능성을 개발단계에서부터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